

충현교회 청년2부 총회 회칙

2024. 8.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현교회 차세대위원회 청년2부(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회는 충현교회 차세대위원회 내에 두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 청·장년 면려회 동서울노회의 지회가 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의 목적을 가진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충현교회 청년2부에 등록된 미혼 청년(차세대위원회에서 정하는 연령 기준)으로 신입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신입회원은 청년2부에서 정한 새가족 양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자로 한다.
- 정회원은 청년2부에서 정한 새가족 양육과정을 수료하고 등반한 자로 한다.

제5조(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 자격의 상실은 다음과 같다.

- 본회의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연속 결석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회원 자격의 상실은 해당 팀장이 제적에 대한 사항을 면려회에 통보하고, 면려회는 해당 사항을 종합하여 교사회에 보고하며, 부장의 허락을 득하여 시행한다.
- 본회에 영적, 신체적, 경제적인 해를 가하는 회원은 교사회의 승인을 얻어 출입을 제한하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회원이 회기연도 중 결혼을 했을 경우 당해 회원은 신혼가정부에 진급 전환함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결혼한 당해 회원 중 2명 중 1명이라도 회기연도 중 청년2부의 사역(면려회, 팀·조장, 소그룹장 등)중에 있는 경우 사역이 끝날 때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 교회의 권위에 순종, 회칙 준수, 회비 납부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에게는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이 있다.

제3장 조 직

제8조(구성과 임무)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필요시 구성을 확대 및 축소 운영할 수 있으나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 면려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각종 발행물의 편집 책임을 진다. 총회 및 제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회원에 대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회원 경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총무는 본회의 각 부서 활동을 총괄하며 집회 및 행사의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서기는 본회의 제반 문서를 기록, 관리하고 각종 행사와 관련된 문서를 관리한다.
 -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 홍보는 본회의 대·내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회원관리는 본회의 회원에 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8) 봉사는 본회의 비품을 관리하며 대내외 봉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9) 친교는 본회의 모든 행사의 친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10) 선교는 본회의 모든 선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11) 전도는 본회의 모든 전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팀장과 조장은 교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회원들의 양육에 관한 일체 사역을 담당한다.
3. 소그룹장은 소그룹 모임의 운영과 사역을 담당한다.
4. 동기장은 각 동기를 대표하여 동기모임의 운영과 동기사역을 담당한다.

제9조(면려회의 임기) 본회의 면려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면려회의 임기는 출범 후 1년으로 하되 충현교회 학제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보궐 선거 시 정·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명) 본회의 정·부회장을 제외한 면려회는 회장의 추천과 부회장의 결의,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부장이 임명한다.

제11조(면려회의 자격) 본회의 면려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면려회는 반드시 충현교회 등록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청년2부에 등반한 자로 한다.
2. 정·부회장은 충현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으로서 청년2부에 등록한지 2년 이상 적을 두고 최근 2년 청년2부 평균 출석률이 70%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제12조(소그룹의 설립과 운영) 본회는 산하에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소그룹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소그룹은 복음 중심의 특수한 사역과 목적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1. 소그룹은 청년2부 정회원 4인 이상 또는 회장단의 발의와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립될 수 있으며, 설립 시 소그룹 신청서와 활동 계획서를 면려회에 제출 하고 면려회는 교사회에 보고한다.
2. 각 소그룹은 설립 목적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 모임과 최소 연 1회 이상의 소그룹 활동을 가져야 하며, 회기 변경 시 전년도 활동 내용과 내년도 활동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면려회에 제출 하고 면려회는 교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및 재정

제13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정기 총회 : 면려회의 건의와 교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정한 날에 소집하되 총회 4주일 전에 공고하고 당일 참석한 정족수 발표로 총회를 개최하며 사업 보고, 결산 보고, 회칙 개정, 정·부회장 선거 등 총회 의결 사항을 처리한다.
2. 임시 총회 : 정회원의 과반수 또는 면려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총회 2주일 전에 공고 후 개최하며 회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3. 월례 회의 : 매월 셋째 주에 실시하며 전월 행사 보고 및 결산과 익월 행사를 안내한다.
4. 모든 회의는 청년2부 운영 세칙에 따라 시행한다.

제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면려회비, 예산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선교 사업을 위해 별도로 헌금을 할 수 있다.

제15조(회비) 본회의 회비 수납 방법은 면려회의 결의로 교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장 회칙 개정 및 선거

제16조(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면려회나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단, 회칙 개정안은 총회 2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17조(회칙 개정 위원회) 본회의 회칙 개정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 회장의 위촉과 면려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 8주일 전에 회장단,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회칙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며, 회칙 개정 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2. 임시 총회 : 회장의 위촉과 면려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 8주일 전에 회장단, 팀장, 조장 각 1인으로 회칙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며, 회칙 개정 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제18조(선거 관리 위원회) 본회의 선거 관리 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 8주일 전 직전 회장을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단, 전년도 회장이 유고시에는 교사회의 승인을 거친 1인을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선거 관리 위원장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회 정회원 10인 이하로 구성된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총회 7주일 전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3. 선거 관리 위원은 정·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하며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정회원을 권면하여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입후보 운영 방식은 청년2부 선거 관리 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라 시행한다.
5. 기타 사항은 선거 관리 위원장의 재량에 따르며 교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9조(선거) 본회의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정·부회장 선거 입후보는 선거 3주일 전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2. 정·부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2인이 출마한 경우 당일 참석한 회원의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회장, 차 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으로 한다.
 - 2) 3인 이상이 출마한 경우에는 1차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 2인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회장, 차 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으로 한다.
3. 선거 부결 시 선거 관리 위원회 및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2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

제20조(보궐 선거의 실시) 본회의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기 중에 사임할 경우에 임시 총회를 거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21조(효력) 본회의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적용 규제)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은 사항은 청년2부 운영 세칙 및 차세대위원회 통상 규례를 따른다.

충현교회 청년2부 운영 세칙

2024. 8. 4. 개정

제1장 선거 관리 위원회

1. 선거 관리 위원회의 구성

- 1) 회칙 1)제5장 18조에 의거해 구성하며 전/현 임원, 팀장 대표, 조장 대표, 동기장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본회 정회원 10인 이하로 구성된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정기 총회 7주일 전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2. 선거 관리 위원회의 역할

- 1)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매년 회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 회기년도 청년2부 면려회 회장/부회장 선출을 위해 구성되며 선출 일정 및 운영 방식과 방향을 정하여 운영한다. 교사회에 청원하여 결정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3. 선관위 자격의 상실

- 1) 선관위 구성원 중 당해 연도에 정한 회장/부회장 선출방식에 의거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았을 경우 그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단, 선관위에서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을 시 선관위의 동의를 얻어 다시 선관위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선관위 일정에 참여가 어려울 시 선거관리 위원장의 결정으로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4. 후보자 추천

- 1) 선관위에서 회장단 후보 2인 이상의 후보를 정기 총회에 추천하고, 입후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예비후보자들은 개인별로 등록한다.
나. 정.부회장 후보를 분리하지 않고 회장단 후보로 출마한다.
- 2)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입후보 추천을 진행할 시에는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진행한다.

5. 후보자 선출

- 1) 회장/부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정기 총회 시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 2)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나. 선관위의 직인이 없는 것
- 다.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 방법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 라.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마.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 바. 둘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 사. 투표용지의 일부 및 전부가 훼손된 것

6. 당선

투표가 종료되고 총회 통과 후 즉시 적용되며 당선자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출범까지 별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7. 부칙

- 1) 본 운영 세칙은 중현교회 청년2부 총회 회칙에 준한다.
- 2) 본 운영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 3) 본 운영 세칙은 공고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장 회의

1 제5장 제18조(선거 관리 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선거 관리 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 8주일 전 직전 회장을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단, 전년도 회장이 유고 시에는 교사회의 승인을 거친 1인을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선거 관리 위원장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회 정회원 10인 이하로 구성된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총회 7주일 전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3. 선거 관리 위원은 정·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하며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정회원을 권면하여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입후보 운영 방식은 청년2부 선거 관리 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라 시행한다.
5. 기타 사항은 선거 관리 위원장의 재량에 따르며 교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